

선박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제53조제2항 관련)

구분	종류	비치량
1.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유조선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 또는 C형	선박길이의 1.5배 또는 200m 중 큰 쪽의 길이
	유처리제·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40X + 100Y + 30Z = U$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연해구역안에서만 운항하는 총톤수 1만톤 미만 1천톤 이상의 유조선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 또는 C형	선박길이의 2배 또는 150m 중 큰 쪽의 길이
	유처리제·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 + 50Y + 15Z = U$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운항하는 총톤수 1만톤 미만 1천톤 이상의 유조선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 또는 C형	선박길이의 1.5배 또는 100m 중 큰 쪽의 길이
	유처리제·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40X + 100Y + 30Z = U$
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연해구역안에서만 운항하는 총톤수 1천톤 미만 100톤 이상의 유조선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A형 또는 B형	선박길이의 2배 또는 100m 중 큰 쪽의 길이
	유처리제·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 + 50Y + 15Z = U$
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운항하는 총톤수 1천톤 미만 100톤 이상의 유조선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A형 또는 B형	선박길이의 1.5배 또는 60m 중 큰 쪽의 길이
	유처리제·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40X + 100Y + 15Z = U$
6.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 또는 C형	선박길이의 1.5배의 길이
	유처리제·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는 유겔화제	$40X + 100Y + 30Z = W$
--	--------	------------------------

비고

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유형	수면위(cm)	수면아래(cm)
A형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B형	30 이상 60 미만	40 이상 90 미만
C형	60 이상	90 이상

2. X, Y, Z, U 및 W는 각각 다음과 같다.

X: 유처리제의 양(kℓ)

Y: 유흡착재의 양(t)

Z: 유겔화제의 양[액상(kℓ), 분말(t)]

U: 해당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

총톤수	100 이 상 200 미 만	200 이 상 500 미 만	500 이 상 1천 미 만	1천 이 상 5천 미 만	5천 이 상 1만 미 만	1만 이 상 5만 미 만	5만 이상 10만 미 만	10만 이 상
U	10	15	20	30	70	100	230	320

W: 해당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

총톤수	1만 이상 2만 미만	2만 이상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20만 미만	20만 이상
W	30	45	60	80	100